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16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신정훈·박해철·차지호

안태준 • 김종민 • 김문수

조계원 · 강준현 · 한민수

이해식 · 채현일 · 신영대

박 정•박정현•김기표

허 영 · 김재원 · 문대림

부승찬 · 강득구 · 모경종

박용갑·한병도·이상식

서삼석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·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·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	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 ~ ③ (생 략)	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	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
	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
	직영기업 · 지방공사 · 지방공단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
	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
	권으로 구매·사용하여야 한다 <u>.</u>